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30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19.

판결 선고 2024. 11. 26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4. 9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영천등기소 2022. 7. 29. 접수 제175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희동

별지